

第106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 11月 17日(金) 11時00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洪起瑞議員 外 4人 發議) 2面

(11時00分 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세미나 등으로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산재된 많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구 행정을 착오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노심초사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행정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지나고 소설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1일이면 정례회가 시작되고 이를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도 한 해를 마감짓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

러분께서는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좀더 성숙되고 발전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가 구현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서의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우리 구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 11월 8일 **洪起瑞** 議員 外 4人이發議한 서울特別市鐘路區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이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

셨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洪起瑞議員 外 4人 發議)

(11時05分)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洪起瑞議員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洪起瑞議員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여성의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을 마련, 여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지역 사회 봉사활동,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 연수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기금은 종로구 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기금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구의회 위원 2명과 구 관련과장, 여성 관련단체장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결산 및 지원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성의 사회적 욕구라든지 좀더 앞서가는 시책을 지역의 행정과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능력 배양 등 대구민 여성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종로구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營條例(案)

(洪起瑞議員 外 4人)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1월 8일자 洪起瑞議員 外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종로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

에서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내지 9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여성 관련법규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에 의거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당해 조례의 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 의견청취 절차는 동의 절차가 아니고 단순히 집행기관의 의사를 물어서 의결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입니다.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이 “종로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여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7개 사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3항에서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내지 제9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구청 과장 4명, 여성관련 단체장 또는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규정 및 제11조의 기금관리장부 비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며, 제12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우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조례의 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정책의 기금 적립 시까지는 일반회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우리 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봐서 매우 타당하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여성의 사회 각종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출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洪起瑞議員**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또 독지가의 기금 등등으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겠죠.

○**宣相善委員** 대략적으로 얼마나 기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洪起瑞議員** 그것은 여기에서 속단할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종로구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취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금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본 기금이 얼마나 되어서 이자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 기금을 사용한다는데 과연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지.

○**洪起瑞議員**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초이고 하나의 걸음마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을 축적할 때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발생이 되더라도 사용은 못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금이 축적이 된 이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완전히 뿌리 내리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알다시피 여성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고 우리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여성의 참여율을 30%로 했는데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우리 洪起瑞議員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 문제가 있으니까 洪起瑞議員이 답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바쁘게 오느라

고 좀 숨이 찬데요 洪起瑞議員님이 발의하셨으니까 洪起瑞議員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여성복지 사업단체 혹은 여성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발전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어느 독지가들의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금으로 해가지고 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은행금리 상황으로 봐서 과연 얼마나 적립이 되어야 이게 운용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또한 9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다만 한 사람당 3만원에서 5만원씩 지급하는데 매월 이것이 회의가 진행되는지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여성복지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며 우리 종로구 자체 내에 여성복지사업을 하는 단체가 과연 몇 개나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전체 얼마나 적립이 되어야 이러한 여성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수입금을 가지고서, 이것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구 집행부 자체에서 이것이 과연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울러서 광범위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洪起瑞議員** 洪起瑞議員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여성단체는 대충 들어서 한 10여 개 정도 단체가 있겠지만 이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목적은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종로구의 여성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만일 이 기금이 조성되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사료되고, 또 두번째는 여성기금이 과연 얼마만큼 목표를 하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宣相善委員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다른 구를 살펴봤습니다. 양천구가 '97년도에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여서 지금 현재 한 1억 4천 정도가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한 100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도 이제 이러한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한 10억 이상은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여성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아이템이 좋은 사업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玄壽漢委員 거기에서 또 한 가지 한번 더 여쭙 볼게요. 지금 우리 나라 경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10억이다 20억이다, 10억이라야 한 달에 이자수입 얼마가 안될 텐데 과연 10억 20억을 과연 어려운 경제 시기에 꼭 이번엔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5천만원이다 1억이다 2억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지만 1억 2억 가지고서 과연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느 여성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이왕 생활복지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洪 議員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東奎 위원장이 들었을 때 이렇게 들립니다. 玄壽漢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출연금 적립을 했을 때 출연금을 적립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답변을 했지만 지금 현재 물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재정상 어렵지만 이것을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치구 집행부에서 한 5천만원이라든지 적립을 했을 때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독지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독지가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비는 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독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1,2년에 이 사업이 실행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놓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설정을 하는 것이지 바로 해가지고 금년에

10억의 기금을 조성하고 5억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시를 해놓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내다봐서 5년 목표로 한다든지 10년 목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답변되시겠습니까?

○玄壽漢委員 洪起瑞議員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가능한 면이 보이는데 우리 실무 담당이신 생활복지국장님은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서가는 여성정책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상정하신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기금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구만 운용을 하고 기금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부를 검토를 해보고 했었는데 여성발전사업이 대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문제는 洪 議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조례가 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바로 10억이면 10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지금 기금을 바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기금을 3년에 나눠서 한다든지 5년에 나눠서 한다든지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때부터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洪 議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차분히 적립을 해가면서 또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여성 부분에 대한 권익신장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린 데 대해서 보완적이 되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에서 양천구 한 군데만 1억 얼마인가 적립을 해냈다고 하는데 물론 여성단체가 10여 개 단체가 있다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는 특별히 따로 그러면 양천구 같은 데는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洪起瑞議員 예, 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는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洪起瑞議員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언뜻 들었는데 서울시에도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洪起瑞議員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正大委員 기금만 조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전까지는 사업의 요체라든지

○洪起瑞議員 서울시도 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야 좋아지죠. 예산이 이쪽으로 얼마나 많이 기금이 조성이 될지는 그것은 좀 미지수고 유명무실하게 이름은 발전위원회라고 해놓고 기금 조성에 인색한다든가, 또 서울시는 언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천구는 '97년도면 3년 동안 모았는데 1억 얼마밖에 안 모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미사여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는, 여성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하는 하나의 의지 표현에 그치는 그런 감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국·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미사여구 같아요. 어떠한 의지도 별로 없고 25개

구에서 1개 구가 이렇게 해서 조금 기금 조성만 해냈다는 걸로 그것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의지 표현이 강약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여성발전위원회가 핵심적으로 해나가야 할 요체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조례 제3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기금 용도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고, 지금 저희도 여성발전기금설치 조례를 준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단지 저희가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正大委員 만약에 기금이 10억 내지 5억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요사업의 행위로서 한두 가지만 들어봐 주십시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 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고 여성복지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金正大委員 우리 의회 의원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正大委員님께서 질의 중에 중복성은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네.

○委員長 李東奎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말씀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동료의원인 洪起瑞議員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시대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여성이 사회에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앞으로 더 참여 확대를 하느냐는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금방 효과를 본다는 것은 극히 힘들습니다. 여기에는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들고 그 후에 어떤 가시적인 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여성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 중복성 없이 이 발전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 지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현재 여성권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을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적립되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해서 지원함으로써 여성분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발전기금을 마련하는데 출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최초로 얼마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할 것인지 1억원을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여성발전기금의 1차 목표를 얼마를 정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감안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1차 목표는 10억 정도는 해야 1년에 이자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1억이나 8천만원 정도 이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1차 목표는 10억 정도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나 여성복지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이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宣相善委員 그 후에는 절대 중복이 없도록 여성발전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 나가야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절대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선 여성분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뛰고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그 발의하신 洪起瑞議員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洪起瑞議員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설치가 된 이후에 우리 여성단체들이 회합을 갖는다든지 해서 그분들도 앞장서서 기금을 축적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재 어떤 법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설치가 되면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宣相善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우리 洪起瑞運營委員長님께서 좋은 창안을 하셔서 조례상정을 하셨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우리가 조례로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데 남성발전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이것이 지방자치법 같은 데에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높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남성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남성발전기금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금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현재 우리 사회적인 제도에서 여성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정책

적으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그에 걸맞게 하려고 洪起瑞 運營委員長께서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종로구 여성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국장님 의견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무 국장님의 의견이 많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혜택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드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남성들보다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은 시기적인 것이 문제이지 당연히 조성되어서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泰淳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내용인데 우리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말이죠 집행부 즉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자꾸 빗나가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

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청소년단체,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증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성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발전기금이 있다면 좋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지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십시오.

○玄壽漢委員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여성단체에 1년에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자면 부녀복지 사업으로 금년같은 경우에 3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녀복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하고 여기서 기금하고는 중복이 되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조례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쓰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여성복지 분야에 일반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 분야에 3억 1,7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금을 해서 주시면 그 동안에 저희가 여성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을 제대로 못했던 분야같은 데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玄壽漢委員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어서 이 수익금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돈은 안하고 여기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복지에서 3억 몇 천 만원을 연간 지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여성발전기금이 얼마큼 있어야 3억 얼마의 이익금이 들어오겠

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에 들어가는 3억 1,700만원 전체를 기금에서 사용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성복지 중에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될 분야가 있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도 기금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 용도분야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안하고 나머지 부분만 편성해서 중복이 안되게끔 하겠다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여성복지 전체를 기금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은 한이 없죠.

○玄壽漢委員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회계는 안하고 이 기금에서 하겠다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이 기금 용도로 지정된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는 사실 이런 것은 주무부서인 생활복지국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한발 뒤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타구와 항상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종로구하면 어떤 데입니까? 타구보다 한발 앞서가는 그런 종로구를 만들어갔으면 하는데 앞에 계신 주무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저희도 시기적인 것만 문제였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각종 조례나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으시므로 여기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여성발전기금 조례는 소외계층에 있는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마는 기금목표를 설정해서 기금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본 조례의 취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기금 적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

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0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時50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東奎 崔康洵 鄭泰淳 千相旭
玄壽漢 劉燦鍾 洪起瑞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生活福祉局長 李炳滿